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목적 확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39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목적 확대(안 제27조)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4. 7. 23.

다. 회 부 일: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목적 확대(안 제27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허가 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u>국외 전시</u>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 ----- ----- <u>국외 전시</u> , <u>조사·연구</u> -----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u>국외 전시</u>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국외 전시</u> , <u>조사·연구</u> ----- ----- ----- ----- ----- -----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¹⁾.

참고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제21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을 통해 국보·보물 또는 민속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목적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반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완화한 바 있음²⁾.

개정안은 국보·보물 등의 경우와 같이 근현대문화유산 중 국가등록 문화유산을 전시 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시행 2024.9.15.)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3., 시행 2025.1.14.)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 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 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국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연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 제고 및 문화유산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역시 현행법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수출은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려는 취지이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의 여지를 두는 것 보다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³⁾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반출하는 경우에만 국가유산청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법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부칙에서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4년 9월 15일⁴⁾부터로 하고 있는데 국보·보물 등을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외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의 시행일이 2025년 1월 24일부터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시행일을 이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384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2023.9.14. 제정, 2024.9.15. 시행예정임

참고 1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현황

(2024.7.31. 기준)

연 번	신청 일자	신청 기관	반출대상	반출목적	반출국가	반출 기간	허가 일자
1	'16. 12.7.	국립 중앙 박물관	(1점) -운낭자상	싱가포르 국외전시 "한국의 보물: 조선왕 조의 예술과 문화" 출 품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 박물관)	'17.3.30. ~'17.8.23.	'17.2.9.
2	'22. 5.27.	국립 현대 미술관	(4점) -가족도 -론도 -남향집 -부채를 든 자화상	2022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 일환 "사이의 공간 한국 근대미술" 출 품	미국 (LA카운티 뮤지엄)	'22.8.19. ~'23.3.17.	'22.8.5.



<운낭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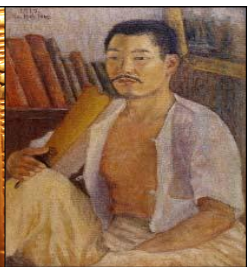
<가족도>



<론도>



<남향집>



<부채를 든 자화상>

※ 자료: 국가유산청